

2023년도 제1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84건(안건번호 제2023-89095호~9048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9095호~89097호(순번 1번~3번)는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등을 판매중인 사안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의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3-89098호(순번 4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9099호(순번 5번)는 ㉠㉠㉠ ㉠㉠㉠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89100호~89103호(순번 6번~9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 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9104호~89113호(순번 10번~19번)는 해당 게시물

내용의 성격,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6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1건(안건번호 제2023-22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안건 1건을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8회 저작권보호심의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
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68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한 건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음악 편집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설치대행 해준다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임. 해당 소프트웨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정품을 약 ₩₩₩₩₩에 구매할 수 있음.
 (순번 2번~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 내용을 보면 이메일 등을 통해 파일 및 설치방법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각 소프트웨어들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리셀러를 통해 정품의 구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기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설치 방법 등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정품 가격의 4분의 1에서 8분의 1에 이르는 저가에 판매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적법한 리셀러가 아니라 불법복제물, 개별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교육용 등의 라이선스키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정보 등을 공중에 제공 중인 것으로 보임. 이는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 본건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이 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사정 및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유통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 내지 3번은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의 설치 대행 또는 판매 중인 사안으로, 판매가격이 합법시장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나 게시글 본문 내용만을 보았을 때 저작권 침해라는 점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판단됨.
- A 위원: 소프트웨어 안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음.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떠한지?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 의견임.
- 참석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순번 1번~3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카페에 만화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카페에 일본 만화저작물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를 통해 원천게시물로 이동하여 만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으며, 원천게시물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중이 불법복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이 된다고 할 것임.

한편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하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본 원칙이나,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순번 4번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에 악보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해당 악보를 제공하는 댓글이 게시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에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

물을 작성한 건으로, 게시글 댓글에 해당 악보의 일부 및 가사를 게시한 사안임. 해당 악보는 합법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 중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3장 중 1장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 연주의 목적으로 위 악보를 이용하고 있는 점,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저작물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장대체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일회적이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5번은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9번은 권리자 및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만화저작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6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6번 내지 9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0번~139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684

개입.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영화, 만화, 게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그 중 순번 10번 내지 19번은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대부분인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0번 내지 19번은 저작권 침해로 보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순번 10번~19번은 해당 게시물 내용의 성격,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순번 20번 이하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139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순번 10번~1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9095호~89097호(순번 1번~3번)는 전체위원회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3-89098호(순번 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9099호(순번 5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9100호~89103호(순번 6번~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9104호~90484호(순번 10번~139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안전번호 제2023-89104호~89113호(순번 10번~1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2호 1개 안건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9.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